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1. 6. 11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박성원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5월 31일
- 회부일자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학교를 추가하여 교복지원 대상 학교를 명확히 하고, 교복지원 대상에 각종학교를 포함시켜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에 “학교” 를 추가함(안 제2조)
- 교복 지원 대상에 각종학교를 추가함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 과정에 한함)에서 각종학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, 개정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은여울중학교, 은여울고등학교, 다다예술학교(중학교 과정),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, 글로벌선진학교(중·고등학교 과정) 등 5개 학교의 신입생 연간 160명 정도로 예상됨.

-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 대상을 각종학교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